

『구미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』 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2. 제안이유

- 소셜네트워크서비스(SNS)를 활용한 시민과의 소통이 증대됨에 따라 SNS 활성화를 위한 제반 절차와 추진 근거를 체계적으로 마련하여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SNS 개설,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(안 제3조 ~ 제5조)
- SNS 서포터즈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(안 제7조 ~ 제8조)
- 공로자 포상 및 SNS 민원 처리에 관한 사항(안 제9조 ~ 제10조)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
-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(붙임)
- 합 의 : 감사담당관, 기획예산담당관과 합의되었음
-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

5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안은

- 온라인, 모바일 등 정보통신망을 통한 소통매체가 발전하는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구미시민의 시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, 시와 시민 및 시민상호간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